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유효기간 확대〉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91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유효기간 확대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은석의원 등 12인
2. 제 출 일 : 2024. 8. 16.
3. 회 부 일 : 2024. 8.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이 없거나 현행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하고 관계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한편, 그 기간 내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효기간 내에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거치고 법령 정비까지 완료하기 어려워, 유효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이러한 논의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2024년 2월 개정을 통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각각 4년 및 3년까지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

효기간을 각각 4년 및 3년 이하로 하고,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융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10항 및 제10조의6제9항).

Ⅲ. 검토의견

1.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유효기간 확대

개정안은 최장 2년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각각 4년,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하고,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범위를 2년 이하로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⑨ (생략)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u>2년</u>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⑩ ----- <u>4년</u> ----- ----- -----.
⑪ ~ ⑭ (생략)	⑪ ~ ⑭ (현행과 같음)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 ⑧ (생략)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u>2년</u>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유효기간</u> 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⑨ ----- <u>3년</u> ----- ----- -----. ----- ----- ----- ----- ----- ----- <u>2년 이하</u> <u>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u> ----- -----.
⑩ ~ ⑮ (생략)	⑩ ~ ⑮ (현행과 같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산업융합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기간·규모·구역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로, 현행법상 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련 법령에 해당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맞는 허가의 기준·요건이 없거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¹⁾

‘임시허가’는 안전성 등의 검증이 완료된 산업융합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법령 정비 이전에 임시로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로, 관련 허가의 기준·요건이 없거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²⁾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며, 관련 규제법령이 정비

1)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2)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되지 아니한 경우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규제특례의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³⁾ 임시허가는 연장기간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⁴⁾

2024년 9월 기준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유효기간 도래 (연장포함)전 법령정비가 완료된 누적비율은 16.8%에 불과함.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도래전 법령정비 현황

(단위: 건, '24.9월 기준)

연도	신청 건수	승인 건수	법령정비 완료 과제수 ⁵⁾
2019	102	39	25
2020	118	63	9
2021	129	96	23
2022	159	129	23
2023	180	160	14
2024	162	74	0
합계	850	561	94(16.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3)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⑩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제10조의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제10조의6(임시허가) ⑨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5) 해당연도 법령정비 완료과제는 과제승인연도와 상관없이 해당연도에 법령정비가 완료된 과제수를 집계한 것임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유효기간 내에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을 거친 후 법령 정비까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유효기간을 규제특례의 경우 최대 4년, 임시허가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과 같이 유효기간을 확대한다면 관련 법령 정비의 지연 및 예측 곤란한 요인에 의한 실증 장기화 등 불확실성에 따른 사업의 지속성 안정성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와 유사하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각각 4년 및 3년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⁶⁾

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과제의 유효기간을 일괄하여 확대하는 경우 장기간의 실증기간을 부여하게 되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고, 단기간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

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⑨ 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실증이 지연된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내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증특례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⑩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법령정비 필요성 입증이 가능한 과제까지 불필요하게 시험·검증기간이 장기화되어 규제법령 정비가 더욱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을 최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규제특례는 4년, 임시허가 3년 이하의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461